

「제13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」 예비관광벤처부문 모집 요강

관광 분야의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「제13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」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2년 2월 4일

I 모집개요

□ 주최 : 문화체육관광부

□ 주관 : 한국관광공사

□ 사업목적

- 관광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한국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

□ 선정규모 : 총 35개 내외

□ 지원대상

-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을 계획 중인 예비(재)창업자로 사업 공고일 기준(22.2.4)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

- ① 창업경험이 없는 자로 공고일 기준 사업체(개인, 법인)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
- ② 창업경험이 있으나 폐업한 자로 예비창업자 인정범위에 충족하는 자

폐업경험이 있는 예비창업자 인정범위

가. 기존 사업자 폐업 후, 이종업종으로 창업할 예정인 자

※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(5자리) 기준 (통계청 통계분류포털 kssc.kostat.go.kr 참조)

나. 기존 사업자 폐업일이 3년이 경과 되고 동종업종으로 창업할 예정인 자

※ 사업공고일(22.02.04) 기준으로 폐업일 경과 기간 산정

□ 모집유형

모집유형	개념	예시
체험콘텐츠형	관광객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사업	캠핑, 한류, 미식, 무장애, 반려동물, 공연 등 특정 테마와 연계된 여행상품, 레저스포츠와 연계된 액티비티 여행상품, 지역 특화형 여행상품, AR/VR 활용 콘텐츠 제작 등
기술혁신형	혁신적 기술로 관광편의를 제공하며 IT 등 기술 자체가 수익모델인 사업	관광 플랫폼, VR/AR 기술개발, 챗봇 안내, 스마트 모빌리티, AI기반 여행 큐레이션 서비스, IoT 짐배송 등
시설기반형	시설 또는 물적 자원을 핵심기반으로 하는 관광사업	IT 기술 접목 테마공원, 사물인터넷 적용 호텔, 마을호텔 운영, 목장·농원 자원 활용 체험 상품 등
기타형	타 유형에 속하지 않은 창의적인 관광사업	

- ① 모집유형 중 창업 아이템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 공모전 신청
- ② 융·복합 아이템일 경우 모집유형 중 주력부문 선택
- ③ 모집유형 구분 없이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

II 지원내용

□ 지원기간 : 총 7개월 (협약 체결일로부터 ~ '22.11월 예정)

□ 지원내용 :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, 교육 및 컨설팅 등

구분	지원내용	비고
지원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원규모 : 평균 4,680만원 (최대 7,700만원~최소 3,300만원) *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지원금 차등 지원 ** 사업화지원금은 협약기간 동안만 집행가능 ***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비관리시스템 활용(바우처카드 지급) ▪ 자금용도 : 인건비, 재료비, 외주용역비, 광고선전비, 유·무형 자산취득비 등 	자부담(현물) 10% 포함 (총 사업비 기준) * 붙임 '사업화자금 사용기준' 참고
교육 및 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창업교육 :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 ▪ 컨설팅 :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	-
홍보·판로개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내·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	-
네트워크 및 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네트워크 : (예비)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▪ 투자유치 : 유관기관 투자유치 지원 	-
투자유치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관광벤처사업 공모전' 선정 기업은 문체부에서 조성한 관광기업육성펀드의 투자대상에 포함 	실제 투자여부는 펀드운용사에서 판단
예비관광벤처기업 자격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예비관광벤처기업 자격 부여 ('25.12.31까지) 	기타 안내사항 참조

III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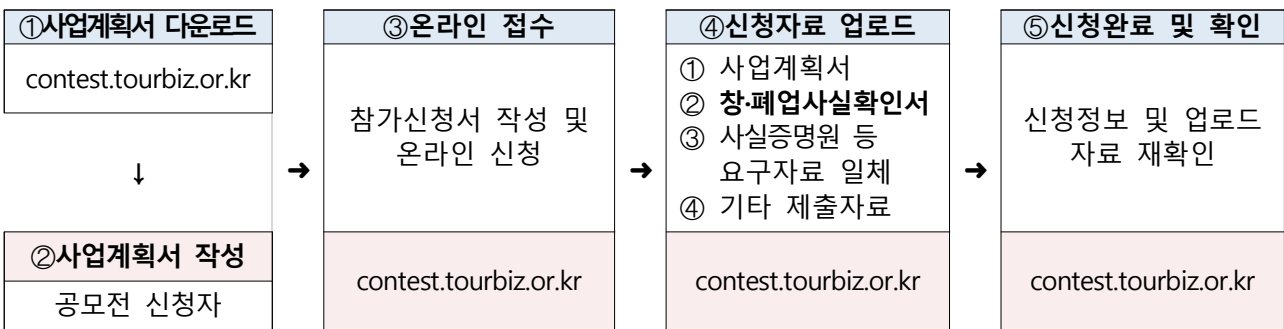
□ 신청기간 : '22년 2월 4일(금) ~ 3월 8일(화) 14:00시 까지

* 신청 마감일은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마감일 2~3일 전 신청하는 것을 권장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 (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사이트 : contest.tourbiz.or.kr)

* 참가신청 및 제출자료 우편, 방문접수 불가

< 공모 신청절차 >



□ 제출서류

제출서류		제출방법	비고
참가신청서		공모전 신청 시 온라인 작성 및 제출	공모전 신청 웹 사이트 (contest.tourbiz.or.kr)
개인정보제공동의서			
사업계획서 및 창·폐업 사실확인서, 가점서류, 참고자료		온라인 제출(PDF 파일로만 제출) ※ 공사 제공양식 준수	
창업경험이 없는 자	사실증명 (사업자등록사실여부)	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원을 스캔하 여 PDF로 제출 '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'으로 선택하여 제출	① 온라인 발급 : 국세청 홈택스 ※ 유의사항 : 온라인 발급 시 3시간 내외 소요되 어 접수마감 전 사전 준 비요망 ② 오프라인 발급 : 관할 세무서
폐업경험이 있는 자	사실증명 (총사업자 등록내역)	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원을 스캔하 여 PDF로 제출	
가점 서류 (해당자에 한함)	관광창업 아카데미수료증 (아카데미 수료자)	관광창업 아카데미 수료증 스캔하여 사업계획 서 별첨에 첨부 *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한 수료증에 한함	사업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
	주민등록 등본 (청년우대)	주민등록 등본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별첨에 첨부	

※ 공모전 신청 및 서류제출 주의사항

- ① 사업계획서는 공모전 신청 사이트에서 제공된 양식만 허용되며, 임의 양식으로 제출한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
- ② 제출서류는 접수일 마감까지 공모전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 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되며, 미 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및 가점 불인정
- ③ 각종 서류 제출 후 접수 및 서류 첨부 여부 반드시 확인, 미확인으로 접수 및 제출 서류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
- ④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심사·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, 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발각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심사 종료 후 파기
- ⑥ 제출서류는 발급일이 공고일 이후(공고일 포함, '22.2.4.~)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

IV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방법 및 기준

- **평가절차** : 지원자격검토 → 1차 서류평가 → 2차 발표평가(1.8배수)
- **평가기준** : 사업의 창의성, 시장 및 사업모델, 사업화전략, 사업의 지속가능성, 리더십, 관광산업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**우대사항** : 가점 항목 해당 시 최대 2점 부여
 - * 1차 서류평가에 한하여 적용되며, 항목별 증빙서류 미 제출 시 가점 불인정

< 가점항목 및 점수 >

가점항목	지원내용	점수	비고
아카데미 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관광창업 아카데미 수수료자 *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한 관광창업 아카데미 수수료자에 한함 	1점	
청년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가점대상 :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창업자로 주민등록등본 상 '82.02.05 이후 출생자 * 관련근거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	1점	최대 2점

□ 최종선정

- 평가기준에 따라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
 - * 평가결과 및 사업비 활용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화 지원금 차등 지원

< 공모전 평가 및 선정 프로세스 >

구분	대상자	주요내용
지원자격검토	공모전 신청자	▪ 제출서류, 예비창업자 지원자격 등에 대한 검토 진행
1차 서류평가	지원자격검토 합격자	▪ 평가방식 : 신청자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▪ 평가기준 : 창의성, 시장 및 사업모델, 사업화전략, 지속가능성, 리더십, 관광산업 연관성 등
1차 서류평가 합격후보자 추가증빙 제출	1차 서류평가 합격후보자	▪ 기 제출한 창·폐업사실증명서 상의 각 연번의 사업자별 세부증빙을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두 제출 * 복수의 사업자를 폐업한 사실이 있거나 공고일 이후 창업한 경우,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사업자별 해당 증빙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- (계속사업자 경우)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 추가제출 - (폐업사업자 경우) 폐업사실증명원 - (사업양도, 비영리조합 등) 사실증명(대표자등록내역, 고유번호증 등 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) * 증명서 발급일이 공고일 이후(공고일 포함)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** 단, 창·폐업 이력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 제출서류 없음 *** 공동대표일 경우 각 대표별 세부증빙 모두 제출
1차 합격자 공지 및 2차 추가서류 제출	1차평가 합격자	①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(대표자 명의) * 증명서 발급일이 공고일 이후(공고일 포함)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②창업·유지확약 동의서 ③2차 발표평가 자료(지정양식)
2차 발표평가 (1.8배수)	1차평가 합격자 (서류제출자에 한함)	▪ 평가방식 : PT발표 및 질의응답 * 참가신청서 대표자만 허용, 팀원 1명 배석가능(참석자 신분증 지참) ▪ 평가기준 : 창의성, 시장 및 사업모델, 사업화전략, 지속가능성, 리더십, 관광산업 연관성 등
최종선정	2차평가 합격자	▪ 합격자 심의 후 최종 선정자 확정

V 신청자격 제한

- 예비창업자 인정범위에 충족하지 않은 자
 - ※ 공동대표로 창업 예정인 경우, 대표자 전원이 예비창업자 인정 범위에 충족해야 함
- 관광분야 외 창업아이템으로 공모전에 신청하는 자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에서 규정한 창업제외 업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)을 영위하려는 자는 지원 불가

- 공모전에 신청한 동일 아이템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, 선정되어 지원받을 예정인 자

◆ **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중복수혜 범위**

- **참가제한 기준** : 최근 3년(19~21년)간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 참가하여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

- 기 출원·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·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
- 공모전 공고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재직자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

[예외조건]

- ① 공모전 접수 마감일(22.3.8)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- ② 세금분납계획(체납처분유예신청)에 따라 성실 납부중인 자
- ※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전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시 관련자료 온라인 제출 필수

-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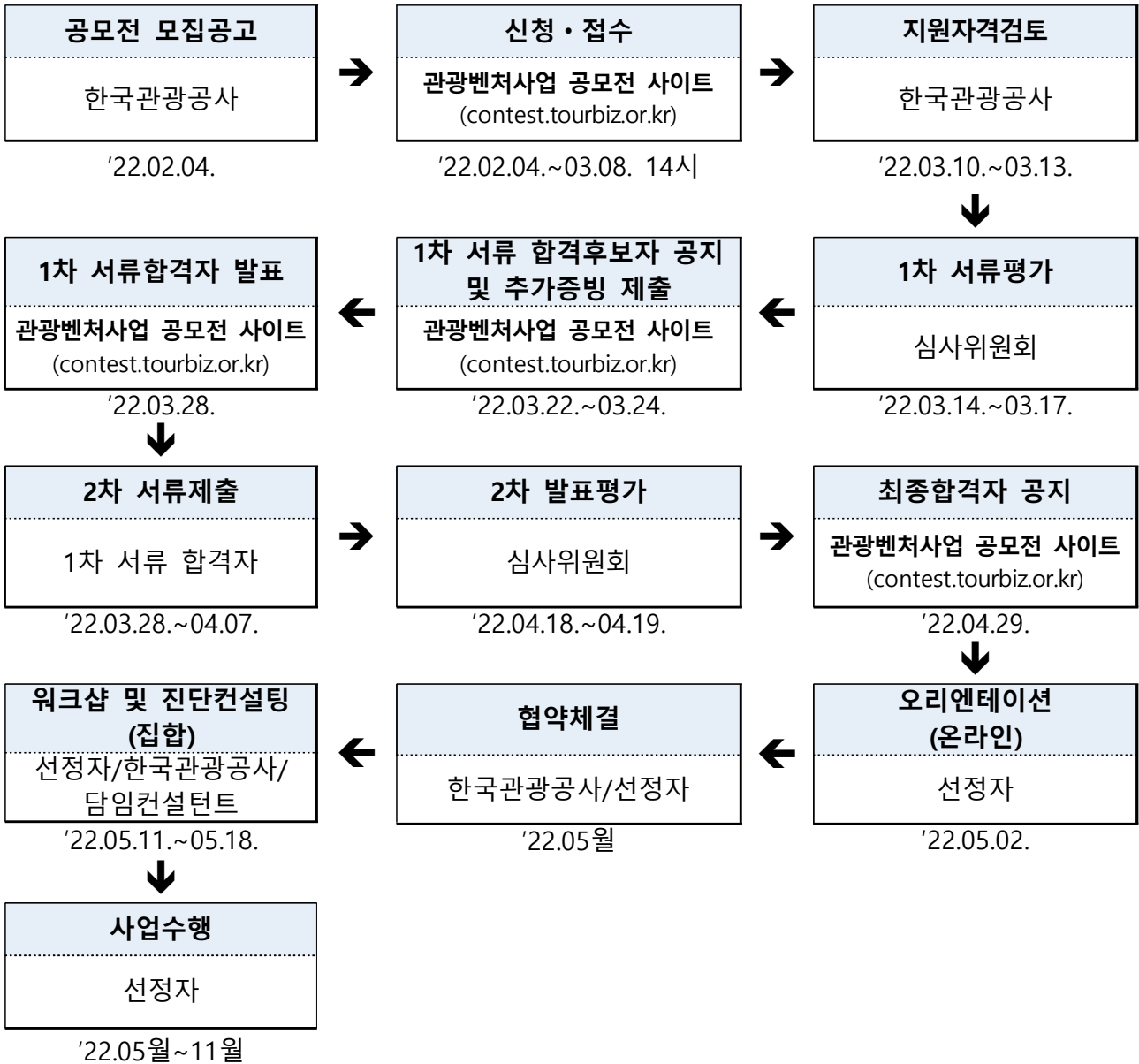
[예외조건]

- ① 공모전 접수 마감일(22.3.8)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-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자
- ③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자
- ※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전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시 관련자료 온라인 제출 필수

-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VI 추진일정 및 신청문의

□ 추진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□ 신청문의

- 문의처 :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운영사무국
- 연락처 : 02-6953-1310
- 이메일 : tourbiz_contest@knto.or.kr

VII

유의사항 및 기타안내

□ **공모전 신청 시 유의사항**

- ◆ 관광관련 창업아이템으로 직접 수익사업이 가능한 자만 참가 가능
- ◆ 사업계획서를 대필하여 제출하였을 경우, 신청자 및 작성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기 또는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
- ◆ 사업계획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최종 제출하는 경우 서류평가에서 제외
- ◆ 사업계획서상의 모든 항목은 평가점수에 반영되며, 작성항목 중 미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결과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◆ 공모전 신청자는 모집요강 및 붙임의 '사업화자금 사용기준'을 사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함

□ **심사제외 대상**

- ◆ 제출서류 양식 미 준수 및 필수서류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◆ 타 부문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접수하는 경우
(예시 : 초기관광벤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예비관광벤처에 접수하는 경우)
- ◆ 사업계획서 양식 임의변경 및 요약서 미 제출하는 경우
- ◆ 사업계획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최종 제출하는 경우
- ◆ 공모전 신청 및 선정 단계별 요구되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 제출하는 경우
- ◆ 동일·유사 아이템으로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타 부문(ex. 초기관광벤처, 성장관광벤처 등)에 중복하여 지원하거나, 명의를 도용하여 중복 지원하는 경우
- ◆ 2차 발표평가 시 참가신청서 상의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은 경우
- ◆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
- ◆ 폐업 후 3년이 미 경과한 시점에 동일업종(표준사업분류 상 세세분류 5자리 동일)으로 동 사업을 신청한 경우

□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유의사항

- ◆ 본 공모전의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, 사업실행계획 등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
- ◆ 선정 이후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 및 예비창업자 지원자격 등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,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◆ 예비관광벤처부문에 선정된 예비(재)창업자는 협약종료 2개월 이내 반드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, 그 대표는 예비(재)창업자 본인이어야 함(단, 개인은 간이과세자 등록불가, 법인의 경우 각자대표 불가)
- ◆ 예비관광벤처부문에 선정된 사내스타트업(사내벤처)은 협약기간 중 법인사업자 창업만 가능(개인사업자 창업 불가)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협약취소 및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,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음
- ◆ 공동창업 할 경우 공동대표는 참가신청서 제출 시 기입한 팀원에 한하며, 대표자 전원의 지원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
- ◆ 「고등교육법 제14조」에서 정한 교원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협약 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- ◆ 정부지원금 유용 및 편취 등 사업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적발되었을 경우, 협약 취소 및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,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음

□ 기타 안내사항

- ◆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'관광벤처사업 운영지침'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- ◆ 공모전 운영사무국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단순 참고사항이므로 모든 사업지원 희망자는 반드시 본 공모요강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응모해야 함
- ◆ 본 공모전과 관련하여 운영사무국은 참가자(기업)의 최종 응모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
- ◆ 본 사업 선정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의 예비관광벤처 자격 부여

붙임

사업화 자금 사용기준

구분		집행기준	비고
재료구입비		· 제품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구입비 ·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수량 구매가능	
외주용역비		· 시제품 제작을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용역비 · 선금인정(최대 50%, 이행보증증권 혹은 지급각서 必)	
유형자산취득비		· 사업화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용 가능한 기계, 설비, 비품 등을 구매하는 비용 · 협약종료 1개월 이전까지 납품 완료건에 한정 · 생활가전,통신기기,일반사무용품 구입 불가 · PC 및 노트북은 신규인력 채용 시 인당 1개 한정 · 건물, 토지, 부대시설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집행(시설비, 인테리어비 등)은 제한 받을 수 있음	
무형자산취득비		· 산업재산권, 특허, SW등록 저작권 등 출원·등록 경비	
인건비		· 신규채용 직원 인건비 및 신규직원 1명당 기존직원 1명 인건비 인정 (인당 월 250만원 한도) ·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 지원불가 · 대표자 및 친족 등 지급불가	총 재무지원금의 50% 초과 집행 불가
지급수수료	기자재 임차비	· 기기, 장비, SW 라이선스 임차료 등, 협약기간 내 인정	
	공간 임차비	·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보육료 형태 임차료 집행 불가 · 주택 및 근무좌석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유오피스 불가	
	시장반응조사비	· 시장반응 확인 및 홍보를 위한 체험비,입장료,가이드비, 참가자 보상비 등 인정	
	전시회참가비	· 등록비, 부스임차비, 참가비, 장치비 등 인정	
	법인설립비	· 법인설립을 위한 법무 수수료	
	회계감사비	· 공사 지정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비용	
	세무기장료	· 세무 기장 수수료 지원	월 20만원 한도
여비	해외여비	· 아이템 고도화, 홍보마케팅 등을 위해 해외 출장 시 집행 비용 (이코노미 기준 해외항공비 실비만 지급)	
교육훈련비		·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· 4대보험 가입인력 한정, 환급비 제외하고 지급	
광고선전비	홍보비	·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(앱), 영상물, 리플릿, 광고게재 등 비용 · 배포용 기프트콘 등 경품 집행불가	
	팸투어비	· 언론홍보 및 유관기관 대상 홍보를 위한 팸투어 실행사 소요비 지원	
창업활동비		· 창업활동을 위한 국내여비, 소모품 구입 등 활용	월 30만원 한도

※ 세부 내용 및 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